

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

2024. 04. 29.



가야대학교 입학처

【 목 차 】

가. 2026학년도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

1. 전년도 대비 2026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
2. 모집시기별 주요사항 요약
3. 전형유형 및 모집인원
4. 모집인원
5.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
6. 지원자격
7.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(정시)
8.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 학력 기준(수시)
9.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
10.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

나. 수시모집

1. 학생부교과(일반학생)
2. 학생부교과(가야인재)
3. 학생부교과(지역인재)
4. 학생부교과(기초생활수급자)
5. 학생부교과(농어촌전형) 【정원외】
6. 학생부교과(특성화고 졸업자) 【정원외】
7. 학생부교과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【정원외】
8. 기타(재외국민과 외국인(2% 이내)) 【정원외】

다. 정시모집 【정시 “다”군】

1. 수능위주(일반학생)

가. 2026학년도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

1. 전년도 대비 2026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

구 분	2026학년도	2025학년도																								
입학 정원	440명	460명																								
모집 인원	471명 (정원내 : 446명, 정원외 25명)	493명 (정원내 : 467명, 정원외 26명)																								
모집 시기별 인원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수시</th><th>정시[다]군</th></tr><tr><td>정원내</td><td>417</td><td>29</td></tr><tr><td>정원외</td><td>25</td><td></td></tr><tr><td>합계</td><td>442</td><td>29</td></tr></table>	구분	수시	정시[다]군	정원내	417	29	정원외	25		합계	442	29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수시</th><th>정시[다]군</th></tr><tr><td>정원내</td><td>437</td><td>30</td></tr><tr><td>정원외</td><td>26</td><td></td></tr><tr><td>합계</td><td>463</td><td>30</td></tr></table>	구분	수시	정시[다]군	정원내	437	30	정원외	26		합계	463	30
구분	수시	정시[다]군																								
정원내	417	29																								
정원외	25																									
합계	442	29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수시	정시[다]군																								
정원내	437	30																								
정원외	26																									
합계	463	30																								
전형 변경	정원내 기초생활수급자 전형	정원내 지역인재(기초생활수급자)전형																								

2. 모집시기별 주요사항 요약

구 분	내 용	비고
모집인원	471명 (정원내 446명, 정원외 25명) 수시 : 442명, 정시 29명	
수시 전형명 및 전형요소	[정원내] - 일 반 학 생 : 240명 - 가 야 인 재 : 147명 - 지 역 인 재 : 28명 - 기초생활수급자 : 2명 <u>*전 학 과 : 학생부 100%</u>	
정시 전형명 및 전형요소	정시모집 해당 모집 군 : 모든 모집단위 정시 [다]군 - 일반학생 : 29명 <u>*전 학 과 : 수능 70%, 학생부 30%</u>	
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적용전형(수시)	- 해당사항없음	
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 반영과목수	- 국어,수학,영어 중 상위 2개 영역 + 탐구영역 중 상위1개과목 반영 +한국사반영	
대학수학능력시험 가산점(정시)	- 해당사항없음	
기회균형특별전형	[정원내] - 지역인재전형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[정원외]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- 농어촌학생 - 특성화고졸업자	

3. 전형유형 및 모집인원

모집 시기	전형유형		모집단위	비고
수시	정원내	일반학생	240	
		가야인재	147	
		지역인재	28	
		기초생활수급자	2	
	정원내 소계		417	
	정원외	농어촌학생	8	
		특성화고졸업자	6	
		기초생활수급자	10	
		재외국민과 외국인	1	
	정원외 소계		25	
수시모집 소계		442		
정시 다군	정원내	일반학생	29	
정시모집 소계		29		
합 계		471		

※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함

4. 모집인원

학과	모집 정원	수시										정시 다균 정원 내
		정원내					정원외					일반 학생
		일반 학생	가야 인재	지역 인재	기초 생활 수급 자	계	농어 촌	특성 화고 출신 자	기초 생활 수급 자	재외 국민	계	
사회복지상담학과	41	40				40				1	1	1
특수교육과	27	25				25						2
작업치료학과	26	25				25						1
방사선학과	45	44				44						1
간호학과	167	17	110	18	2	147	8	6	6		20	20
물리치료학과	53	4	37	10		51			4		4	2
스포츠재활복지학과	46	45				45						1
부동산금융재테크학과	41	40				40						1
합 계	446	240	147	28	2	417	8	6	10	1	25	29

5.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

모집 시기	전형유형		전형요소 및 반영비율(%)						비고
			학생부		수능	실기	서류	면접	
			교과	비교과					
수시	정원내	일반학생	100						
		가야인재	100						
		지역인재	100						
		기초생활수급자	100						
	정원외	농어촌학생	100						
		특성화고졸업자	100						
		기초생활수급자	100						
		재외국민과 외국인	—				100		
정시	정원내	일반학생	30		70				

6. 지원자격

모집 시기	전형유형		지원자격
수 시 (학생부 교과위주)	정원내	일반학생	1.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.검정고시출신자 3.법령에 의한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자
		가야인재	1.일반고(인문계고) 졸업(예정)자 2.특목고 졸업(예정)자(예체능특목고제외) 3.일반고교(인문계고교) 교육과정 이수(예정)자 (ex. 종합고)
		지역인재	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‘고등학교’를 졸업(예정)한 자 중, 경남, 부산, 울산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 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
		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국내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(제2호 수급자 포함) 나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	정원외	농어촌학생	[유형Ⅰ] 지원자 본인이 농·어촌소재지(읍·면)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 및 부모가 지원자의 중·고등학교 전 재학기간 동안 농어촌지역에 거주 한 자 (부모거주) (사망,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) [유형Ⅱ] 지원자 본인만 농·어촌소재지(읍·면)학교에서 초·중·고 전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(부모 비거주) ※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취지에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미충족자는 결격 처리함. ※ 농어촌지역 적용기준 ①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 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도 농어촌으로 적용함 ② 「도서·벽지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 학생 ③ 특수목적고교 출신자는 제외함(외국어고, 국제고, 화학교, 예술고, 체육고 등)
		특성화고교 졸업자	특성화고교,종합고교의 특성화계열로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(간호과) 졸업(예정)자 ※ 마이스터고, 예술고, 체육고, 특수목적고, 학력인정학교, 대안학교,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불가
		기초생활수 급자 및 차상위계층	국내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(제2호 수급자 포함) 나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모집 시기	전형유형		지원자격
수 시 (학생부 교과위주)	정원외	재외국민과 외국인	가. 재직기간: 역년으로 통산 3년(1095일) 이상의 국외근무/사업/영업 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며 재직한 기간 나. 재학기간: 국외 근무자 재직기간 내 해당 국가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·고교 3년 이상 수료한 자 다. 체류기간(학생):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 마다 3/4 이상 라. 체류기간(부모):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 마다 2/3 이상,

모집 시기	전형유형		지원자격
정 시 다 군 (수능위주)	정원내	일반학생	1.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.검정고시출신자 3.법령에 의한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자
	정원외	농어촌학생	[유형 I] 지원자 본인이 농·어촌소재지(읍·면)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 및 부모가 지원자의 중·고등학교 전 재학기간 동안 농어촌지역에 거주 한 자 (부모거주) (사망,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) [유형 II] 지원자 본인만 농·어촌소재지(읍·면)학교에서 초·중·고 전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(부모 비거주) ※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취지에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미충족자는 결격 처리함. ※ 농어촌지역 적용기준 ①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 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도 농어촌으로 적용함 ② 「도서·벽지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 학생 ③ 특수목적고교 출신자는 제외함(외국어고, 국제고,화학교, 예술고,체육고 등)
		특성화고교 졸업자	특성화고교,종합고교의 특성화계열로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(간호과) 졸업(예정)자 ※ 마이스터고, 예술고, 체육고, 특수목적고, 학력인정학교, 대안학교,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불가
		기초생활수 급자 및 차상위계층	국내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(제2호 수급자 포함) 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※수시모집 미달일 경우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

7.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(정시)

모집 시기	계열	수능성적 활용지표	반영 영역 수	국어영역	수학영역	영어영역	탐구영역	한국사	합 계
정시 다군	전 계열	백분위/ 등급	4개 영역	40%	40%	40%	10%	10%	100%
상위 2개 영역 반영							상위 1과목 반영	반영	

수능성적 백분위	전 학 과	과 목 등 급	영어	한국사
96.00-100.00	700	1	280	70
93.00-95.99	685	2	274	69
90.00-92.99	670	3	268	68
80.00-89.99	655	4	262	66
60.00-79.99	640	5	256	65
30.00-59.99	625	6	250	64
10.00-29.99	610	7	244	62
05.00-09.99	592.5	8	237	61
00.00-04.99	577.5	9	231	60

※ 국어, 수학, 영어 중 택2+탐구영역중 상위 1개과목반영+한국사반영

※ 국어, 수학, 탐구영역은 백분위반영, 영어, 한국사는 등급반영

8.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 학력 기준(수시)

※ 전체전형 및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안함

9.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

1) 반영영역 및 비율 : 교과 100%

2) 학년별 반영비율 및 학기

가) 수시 : 전학년 100%(학년·학기별 반영비율 없음)

- 졸업(예정) : 3학년 1학기

- 졸 업 생 : 3학년 2학기

나) 정시 : 전학년 100%(학년·학기별 반영비율 없음)

- 졸업(예정자) : 3학년 2학기

3) 교과목 반영방법 : 우수교과 8과목 석차등급 반영

모집단위	반영과목
전 모집단위	- 국어, 영어, 수학 교과 중 상위 6개과목 - 사회(역사/도덕포함), 한국사, 과학, 체육 교과중 상위 2개과목 (단, 체육 : 스포츠재활복지학과만 해당) - 진로 선택과목은 최대 2과목 반영가능 - 진로 선택과목 (A : 1등급, B : 3등급, C : 5등급의 석차 등급에 준하여 반영) - 체육 과목 성취도 (A : 2등급, B : 5등급, C : 7등급의 석차 등급에 준하여 반영)



10. 학교폭력조치사항 반영방법

모집단위	반영방법
전 모집단위	정량평가 입시총점(1000점 만점) 가. 조치사항 4,5호 : 총점대비 -1% 나. 조치사항 6,7호 : 총점대비 -3% 다. 조치사항 8,9호 : 총점대비 -5%

나. 수시모집

1. 학생부교과(일반학생)

전형유형	구 분	세 부 내 용
학생부교과 (일반학생)	모집인원	240명
	모집단위	전 모집단위
	지원자격	1.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.검정고시출신자 3.법령에 의한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자
	수능최저 학력기준	적용안함
	전형방법	<u>*학생부 100%</u>

2. 학생부교과(가야인재)

전형유형	구 분	세 부 내 용
학생부교과 (가야인재)	모집인원	147명
	모집단위	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
	지원자격	1.일반고(인문계)고 졸업(예정)자 2.특목고 졸업(예정)자(예체능특목고제외) 3.일반고교(인문계고교) 교육과정 이수(예정)자 (ex. 종합고)
	수능최저 학력기준	적용안함
	전형방법	<u>*학생부 100%</u>



3. 학생부교과(지역인재)

전형유형	구 분	세 부 내 용
학생부교과 (지역인재)	모집인원	28명
	모집단위	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
	지원자격	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‘고등학교’를 졸업(예정)한 자 중, 경남, 부산, 울산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
	수능최저 학력기준	적용안함
	전형방법	<u>*학생부 100%</u>

4. 학생부교과(기초생활수급자)

전형유형	구 분	세 부 내 용
학생부교과 (기초생활 수급자)	모집인원	2명
	모집단위	간호학과
	지원자격	국내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(제2호 수급자 포함) 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	수능최저 학력기준	적용안함
	전형방법	<u>*학생부 100%</u>

5. 학생부교과(농어촌전형) 【정원외】

전형유형	구 분	세 부 내 용
학생부교과 (농어촌학생)	모집인원	8명
	모집단위	간호학과
	지원자격	[유형Ⅰ] 지원자 본인이 농·어촌소재지(읍·면)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 및 부모가 지원자의 중·고등학교 전 재학기간 동안 농어촌지역에 거주 한 자 (부모거주) (사망,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) [유형Ⅱ] 지원자 본인만 농·어촌소재지(읍·면)학교에서 초·중·고 전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(부모 비거주) ※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취지에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미충족자는 결격 처리함. ※ 농어촌지역 적용기준 ①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 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도 농어촌으로 적용함 ② 「도서·벽지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 학생 ③ 특수목적고교 출신자는 제외함(외국어고, 국제고, 화학교, 예술고, 체육고 등)
	수능최저 학력기준	적용 안함
	전형방법	<u>*학생부 100%</u>

6. 학생부교과(특성화고 졸업자) 【정원외】

전형유형	구 분	세 부 내 용
학생부교과 (특성화고 졸업자)	모집인원	6명
	모집단위	간호학과
	지원자격	가. 특성화고교, 종합고교의 특성화계열로 모집단위와 동일 계열 (간호학과) 졸업(예정)자 ※ 마이스터고, 예술고, 체육고, 특수목적고, 학력인정학교, 대안학교,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불가 나. 동일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하지 못한 자 중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
	수능최저 학력기준	적용 안함
	전형방법	<u>*학생부 100%</u>



7. 학생부교과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【정원외】

전형유형	구 분	세 부 내 용
학생부교과 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	모집인원	10명
	모집단위	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
	지원자격	국내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(제2호 수급자 포함) 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	수능최저 학력기준	적용 안함
	전형방법	<u>*학생부 100%</u>

8. 기타(재외국민과 외국인(2% 이내)) 【정원외】

전형유형	구 분	세 부 내 용
학생부교과 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	모집인원	1명
	모집단위	사회복지상담학과
	지원자격	가. 재직기간: 역년으로 통산 3년(1095일) 이상의 국외근무/사업/영업 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며 재직한 기간 나. 재학기간: 국외 근무자 재직기간 내 해당 국가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·고교 3년 이상 수료한 자 다. 체류기간(학생):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 마다 3/4 이상 라. 체류기간(부모):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 마다 2/3 이상,
	수능최저 학력기준	적용 안함
	전형방법	<u>*서류 100%</u>

다. 정시모집

1. 수능위주(일반학생)

전형유형	구 분	세 부 내 용
수능위주 (일반학생)	모집인원	29명
	해당모집군	정시 다군
	모집단위	전학과
	지원자격	1.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.검정고시출신자 3.법령에 의한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자
	수능최저 학력기준	적용 안함
	전형방법	<u>*전학과 : 수능 70%, 학생부 30%</u>